국회에서 의결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박 상 기 법무부장관

## ◉법률 제15752호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249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하고,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액·면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적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수수료 징수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